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문, 사상의 자유를 실현하고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육천 연학인의 정신은 외세의 억압을 반대하고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싸웠던 선배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87년 6월 대국민 항쟁, 88년 조국통일 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민족사의 발전적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학원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제 육천 연학인은 이러한 근본이념과 역사를 바탕으로 자주 학원을 건설하고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공과대학 대의원 일동은 육천 연학인의 절절한 염원과 실천적 의지를 모아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학생회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체 학생회원의 통일 단결과 복리 증진 및 학원의 자주화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

단, 본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5.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① 선거권

②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6. 5항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5항 각 호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5조 (구성) 본회는 공과대학 전체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각 학과 학생회를 조직 기반으로 하며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과 학생회, 단대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제 2장 학생총회

제 6조 (지위와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결 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7조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 8조 (의장)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회장이 맡는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장의 결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제 9조 (소집)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 대의원의 1/2, 회원의 1/20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2.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전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소집, 집행한다.
- 제 10조 (의결) 전체 회원의 1/4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대의원총회

제 11조 (지위) 대의원 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2조 (권한 및 업무)

대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확정권
3.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임명 동의권
4. 각급 학생회 회장, 부회장, 대의원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5. 각급 학생회 운영위원, 집행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 및 시정명령권
6. 특별위원회 구성인준권
7. 기타 대의원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공과대학 동아리 해체 의결권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은 회칙과 같은 규정력으로 가진다.

제 13조 (구성)

1.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각 과 1,2,3,4학년 대표 한명씩, **비례대표**으로 구성된다.

2. **비례대표**는 400인 이상의 대단위 학부, 과 학생회에는 400인을 기준으로 1인씩 **비례대표** 자격을 갖는다.

**** 비례직 대의원 -> 비례대표 명칭 변경 (총학생회칙 변경에 따른 공과대학 회칙 변경)**

3.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된다.
4. ~~4학년은 재적인원에서 제외가능하다. 출석한 경우 재적인원에 포함한다.~~

(4학년 대의원 포함 건의) 조항 삭제

제 14조 (의장단)

대의원 총회는 의장 1장, 부의장 1인을 둔다.

1.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된다.
2. 각 급 학생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3회 연속 대의원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해서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5조 (회의)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의장단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학기 진행하며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예외조항 신설 건의)

3. 임시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의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5.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시 의장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를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 까지 미룰 수 있다.

제 16조 (의결)

1. 과 학생회 행사로 불참한 대의원은 공결로 처리한다.
2. 과 학생회 대표자 미선출은 공결로 처리한다.
3. 공결은 재적인원에서 제외된다.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7조 (해임 의결)

1. 각 급 학생회 정, 부회장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은 재적 대의원 1/4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의결 정족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상시적인 의결기구이며, 대의원 총회 다음의 운영기구이다.

제 19조 (구성)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그리고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그리고 본 회의에 포함된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2.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의 각 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

제 20조 (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업무 및 권한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

1.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각 급 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권

제 21조 (소집)

1. 정기 회의는 주 1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제 22조 (의결)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공과대학 학생회 정, 부학생회장

제 23조 (지위)

1.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을 대표하여 학생총회 의장, 대의원 총회 의장, 운영위원회의 장이 된다.
2. 공과대학 학생회 부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 24조 (신분보장) 공과대학 학생회 정, 부회장은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25조 (권한대행) 공과대학 학생회 정, 부회장이 모두 궐위 때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26조 (업무 및 권한)

1.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급 학생회를 지도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3. 공과대학 학생회의 집행부장을 인선할 수 있다.

제 6장 집행위원회

제 27조 (지위) 본 회의에 있어서 최고 집행기구로서 각 국장으로 각 국별 세로모임의 장이 된다.

제 28조 (구성)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국을 편성할 수 있다. 각 국은 국장 및 부장 및 국·부 원을 둘 수 있으며 국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 위원 인준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받기 전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제 29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와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고유 사업을 진행한다.
2. 각 국장은 세로모임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
3. 국별 세로모임: 정기회의는 주 1회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고 연속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단위에 대하여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4.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제 7장 공과대학 동아리

제 30조 (지위) 공과대학 동아리(이하 동아리)는 본 회 집행위원회의 산하기구의 지위를 가진다.

제 31조 (구성) 동아리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 3조에 의거하여 본 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만 구성된다. 단, 위 사항에 예외적으로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위한 타 단대생의 가입을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제 32조 (운영) 동아리의 운영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동아리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8장 해동학술정보실지킴이

제 33조 (지위) 해동학술정보실지킴이 (이하 해동이)는 본회 집행위원회의 산하기구로써 특별자치기구의 지위를 가진다.

제 34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 학사 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않은 자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동이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35조 (운영) 해동이의 운영은 해동이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9장 학과 학생회

제 36조 (지위) 학과 학생회는 학과의 최고 학생 기구이다.

제 37조 (구성) 학과 학생회는 해당학과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다.

제 38조 (회장) 학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한다.

제 10장 재정

제 1절 총칙

제 39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및 보조금, 학교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의 목적에 위 배되지 않는 학생회의 활동에 사용한다.

제 4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매년 선거이후의 회계운영은 차기 학생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제 41조 (예산)

1. 본 회의 회비는 전년도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채정하여 확정한다.
2.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국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제 2절 감사위원회

제 42조 (지위)

학생자치기구의 제반 사업집행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관계 규정을 두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기구의 강화·발전을 위한 감사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제 43조 (구성)

1.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단위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의원만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무작위 선출한다.
3. 감사위원장은 감사 전반을 총괄 책임진다.
4. 감사위원장은 감사 회의를 주재한다. 단, 정기 감사 첫 회의는 감사위원들의 합의로 열린다.

제 44조 (대상)

공과대학에 포함된 각 급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 45조 (시행)

1. 정기 감사는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정기 감사 1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감사하며 2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감사한다.
3. 임시 감사는 필요성이 인정 될 때 실시한다. 단, 운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실시한다.
4. 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제 46조 (권한 및 업무)

1.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감사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 시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구의 성실한 조력을 요구하고 받을 권한이 있다.
4.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감사결과처리에 대한 의결권한이 있다.

제 47조 (의무)

1. 감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감사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민주적 관례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전에 감사기관에 숙지시키는 의무가 있다.
3.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결과를 다음 학기 대의원총회 대의원과 전체학우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 48조 (임기)

1. 감사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총회 대의원으로서 임기년도의 6월 1일부터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에 대의원 총회 대의원 자격 상실 시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도 종료된다.
2.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감사위원과 동일하다.

제 49조 (시행세칙)

기타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운영규칙에 따르며 감사운영규칙의 개정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 11장 선거

제 50조 (선거권) 선거권은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선거권은 본교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단, 본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 51조 (피선거권) 본 회의 회원 중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은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52조 (시기) 본 회의 각급 학생회 정, 부회장, 대의원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 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제 53조 (임기) 본 회의 각급 학생회 정, 부회장, 대의원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학생회 선거를 부득이하게 11월에 실시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 년도 3월에 학생회가 구성되는 순간까지로 한다. 임기 후 한 달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 54조 (선거방법) 공과대학 정, 부회장의 선거는 300명 이상의 공과대학 학생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 55조 (보궐선거) 본 회의 각 급 학생회장 부회장이 사임,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잔임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제 56조 (선거관리위원회)

1. 공과대학 학생회 정, 부회장을 위한 선거는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2.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 공과대학 집행위로 구성한다.

제 57조 (시행세칙)

1.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정하여 시행세칙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 신설조항 >

2. 본 회에 포함된 모든 학생회 및 학과는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12장 회칙 개정

제 58조 (발의)

본 회칙의 발의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 회원 10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3.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제 59조 (공고) 발의된 대의원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0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의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 61조 (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부칙 >

제 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련 회의에서 확정하고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

제 4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을 가진다.

제 5조 본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